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04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주요 항목별 검토	7
(1) “생산성” 관련 정의 규정 신설	7
(2) “생산성 향상” 관련 정의 규정 신설	9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12
가.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13
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지정·운영	16
다.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 등	20
라.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25
마. 외국인 인력 특례	29

바. 합병절차 등의 특례	31
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	32
아. 규제개선 지원	34
(4)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37

※ 참고자료 39

1. 한국생산성본부 기관 현황	39
2. 개정안 관련 기 시행 중인 사업 현황	4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채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인력·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정의하고,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신설).

나.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16부터 제62조의19까지 신설).

마.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2조의20 신설).

바.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1부터 제62조의23까지 신설).

사.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4 신설).

아.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함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마련함(안 제8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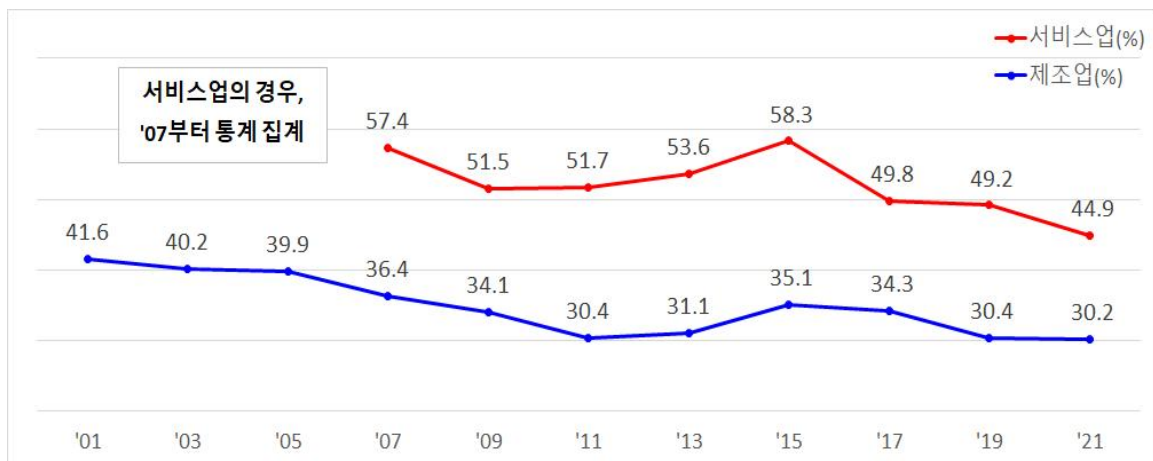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기준)은 2012년 12.3조원, 2014년 13.6조원, 2016년 16.5조원, 2018년 19.9조원, 2020년 29.9조원, 2022년 40.6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의 정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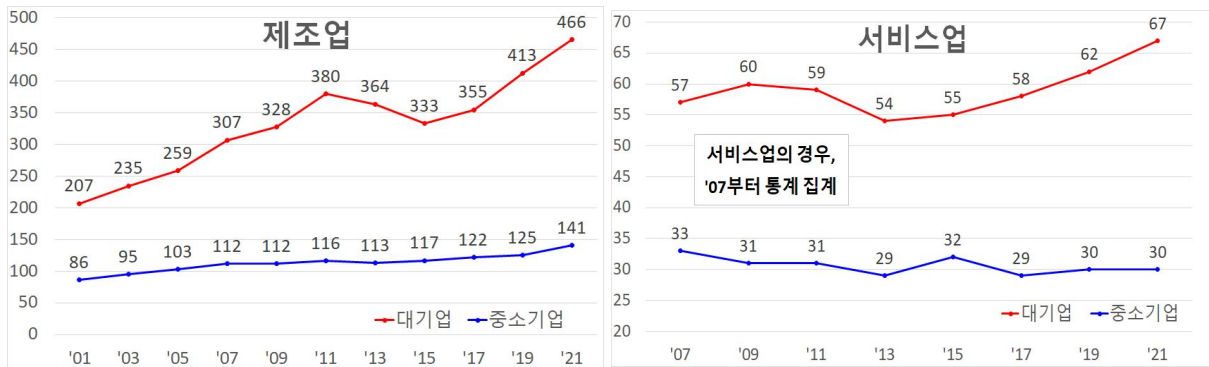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 35.1%에서 2021년 30.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2015년 58.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도의 경우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추이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가공한 것임.

[그림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추이(제조업 및 서비스업)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가공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금 지원, 연구개발지원, 인력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기능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공정혁신, 제품·서비스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경영혁신 등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대한 전략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¹⁾임.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사업·특례·규제개선 등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일괄 지원(One pass)²⁾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주기(Value chain) 생산성 혁신 방안”, 2023. 11.

2)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지원, 특례, 규제개선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임.

① (사업 일괄지원) 설비자금(최대 100억원), R&D(최대 20억원), 제조혁신(최대 6억원), 인력 및 마케팅 등(최대 4억원)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기업당 최대 130억원 지원

② (특례) 외국인 인력, M&A, 투자지분 인정 특례 등 적용

③ (규제개선) 승인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 관계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규제 개선, 필요 시 규제샌드박스로 연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별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동 개정안과 지원목적이나 지원대상이 다소 상이하나 개별기업에 대한 일괄지원체계를 규정한 법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별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률로는,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판로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일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2. 주요 항목별 검토

(1) “생산성” 관련 정의 규정 신설

개정안 제2조제13호는 “생산성”이란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3. “생산성”이란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u>14. (생 략)</u>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산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함. 이러한 생산성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단일요소생산성(노동, 자본 등 투입 개별요소당 산출량의 변화), 총요소생산성(모든 투입요소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 등이 사용되고 있음.

개정안 제2조제13호는 이러한 다양한 생산성의 개념 중 노동생산

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을 특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사후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생산성” 관련 정의를 노동생산성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생산성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노동생산성으로 규정할 경우 주요 지원대상이 제조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제품, 공정혁신)으로 한정됨에 따라 비제조업(지식서비스, 사업서비스, 건설, 도소매, 전산업 등)을 포괄하지 못하게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³⁾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명확한 산식⁴⁾을 통해 다양한 기관⁵⁾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국제표준에 해당하며, 기업규모별/산업별/국가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성 정의를 노동생산성으로 한정하는 경우 자본, 기술 등 다른 요소들의 생산성 개선 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

3)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4565호)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제정법률안이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된 바 있음. 이러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비제조업(지식서비스, 사업서비스, 건설, 도소매, 전산업 등)의 생산성 향상 촉진 활동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노동생산성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이 제시된 바 있음.

4)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동생산성 = (매출총이익-매출원가) / 근로자 수”로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산업별), OECD(국가별) 등의 기관에서 노동생산성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함.

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수정⁶⁾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생산성 향상” 관련 정의 규정 신설

개정안 제2조제14호는 “생산성 향상”이란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을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설계·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을 통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마케팅 방식 등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 조직구조 및 정보관리 개선·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 내부 자원의 효율화 및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영혁신 활동 등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3. (생략)</u> <u>14. “생산성 향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u> <u>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설계</u> <u>·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u>

6)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2조제1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3. “생산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선하는 활동</u> <u>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을 통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u> <u>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 마케팅 방식 등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u> <u>라. 조직구조 및 정보관리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 내부 자원의 효율화 및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영혁신 활동</u> <u>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u>

개정안 제2조제14호는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안 제62조의1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62조의15),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및 승인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활동 지원(안 제62조의16부터 안 제62조의20까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안 제62조의21부터 안 제62조의24까지)의 기준이 되는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그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의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일괄 지원(One pass)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요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산업발전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이미 규정⁷⁾⁸⁾⁹⁾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발전법」상 지원체

7)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8) 「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지원체계가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개정안 중 “생산성 향상”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제14호)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개정안은 이 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4장의2를 신설 하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은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안 제62조의14 신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지정·운영(안 제62조의15 신설),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등(안 제62조의16부터 안 제62조의19까지 신설), 승 인기업 지원 및 사업특례(안 제62조의20 신설), 외국인 인력 특례(안 제62조의21 신설), 합병절차 등 특례(안 제62조의22 신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안 제62조의23 신설), 규제개선 지원(안 제 62조의24 신설)을 규정함.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이 중 안 제62조의14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생산성 향상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14(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생산성 향상 관련 컨설팅 지원 3.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생산성 향상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2조의14제1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관심도와 이해 수준을 높이고자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재무·회계 전반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¹⁰⁾.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산업발전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이미 규정¹¹⁾¹²⁾¹³⁾하고 있고, 이러한

10)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동 조문 신설여부가 연동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겠음.

11)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12) 「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산업발전법」상 지원체계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지원체계가 중복되므로 안 제62조의14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제공·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사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특정부처 및 기관이 독점할 권리가 없는 보편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입장임.

한편, 안 제62조의14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수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¹⁴⁾¹⁵⁾을 추가로 신설¹⁶⁾할 필요가 있음.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지정·운영

안 제62조의15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15(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수립의 지원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6) 참고로, 개정안은 안 제83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장의2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은 안 제83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임.

현 행	개 정 안
	4. 제62조의18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수립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62조의15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약칭을 “전담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이라는 용어는 이 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17)에서 이미 약칭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62조의1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경우 다른 약칭(일례로 “생산성 전담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62조의15제3항은 이러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에서 규정¹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지원, 연구개발지원, 인력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의 정부 정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32조에서 산업의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부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⁹⁾ 별도의 생산성 전담기관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안 제62조의15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⁰⁾.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과 함께 대행 또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정기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거 및 업무수행 방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
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지정기준의 중요 사항·요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수범자가 적어도 어떤 유형의 기준(시설, 인력

19)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다만, 개정안은 중소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한국생산성본부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등)을 갖추어야 할지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4항), 지정취소시 청문의 실시(제5항), 지정취소시 재지정 제한(제6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안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안 제62조의 20에 따른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생산성 향상 목표, 재원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16 신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62조의17 신설),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18 신설).

한편, 안 제62조의19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변경 신청 및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변경이나 중단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16(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 전략 및 추진내용(제2조제14호가목부터 제2조제14호라목까지의 활동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2. 실시기간 및 재원 투입계획 3.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하려는 생산성 목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경우 4.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17(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이하 “공동 생산성 향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16제1항 각 호의 사항

현행	개정안
	<u>및 공동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하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u> <u>1.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u> <u>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u> <u>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공동계획 신청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공동계획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u>1.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u> <u>2. 공동계획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u> <u>3.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경우</u> <u>4.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⑤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u>제62조의18(종합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종합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승인기업에게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19(종합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경제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2.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62조의16 및 제62조의17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18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3항에 따른 변경·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중소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안 제62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를 개정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한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이 수익적 행정행위²¹⁾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법률을 위반하여 이행 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시정요청 또는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등에 따르지 않은 승인기업에 대한 불이익조치수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제출의무(안 제61조의16제1항 및 안 제61조의17제1항 관련)가 개정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1)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으로 인하여 관련 승인기업은 안 제62조의20에 따른 승인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외국인 인력 특례(안 제62조의21), 합병절차 특례(안 제62조의22),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특례(안 제62조의23), 규제개선 지원(안 제62조의24)의 적용 대상이 됨.

라.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62조의20은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지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제1항),

개별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채용·양성 및 재직자 지원 등), 판로지원사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승인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2항)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0(승인기업 지원 및 사업특례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2. 기술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또는 경영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혁신을 말한다)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 4.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지원 5.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

현 행	개 정 안
	업을 승인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20조의3, 제24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 ③ 정부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금지원, 연구개발지원, 인력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승인기업에 일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공정혁신, 제품·서비스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경영혁신 등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대한 전략적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62조의20제2항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 예산을 승인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기업 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줄어들거나 지원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62조의20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 및 사업 특례(제2항)의 경우 정부가 시행 중인 기존 사업²²⁾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 제62조의20제3항은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 받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정부가 아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²³⁾,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22) 개정안 관련 기 시행 중인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2]를 참조

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하고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²⁴⁾²⁵⁾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승인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 생산성 종합계획 승인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마. 외국인 인력 특례

안 제62조의21은 승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한차례 부여가능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²⁶⁾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1(외국인 인력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증발급의 절차와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인력 특례를 승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승인기업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6)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개정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인력 수급 개선 효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일관성 및 외국인 근로자간 형평성 저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31조²⁷⁾,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²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²⁹⁾ 등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개정안의 문안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2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합병절차 등의 특례

안 제62조의22는 벤처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한 특례를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2(합병절차 등의 특례) 승인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승인기업”으로 본다.

개정안은 승인기업에 많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승인기업은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 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상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 벤처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를 준용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상법상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한 특례를 일정한 경우 제외하는 규정³⁰⁾을 두고 있음.

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개정안은 이러한 합병절차 등의 특례를 준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준용 법률의 제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음을 감안한 자구정리가 필요하겠음.

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

안 제62조의23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³¹⁾³²⁾이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의무 지분³³⁾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주식교환(제12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3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제14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제15조), 주식교환의 특례(제16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17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제18조), 간이합병의 특례(제18조의2), 분할·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제19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제2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32)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4호]

제3조(정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3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3(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³⁴⁾에 대한 투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

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다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 규제개선 지원

개정안은 승인기업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며(제2항 및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이러한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 밖에도 승인기업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제7항)을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4(규제개선의 지원) ① 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현 행	개 정 안
	<u>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u> ③ <u>관계 행정기관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중소기업정책심의회(「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⑤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u> ⑥ <u>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u> ⑦ <u>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u>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이행이 수월하도록 규제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제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³⁵⁾,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³⁶⁾ 등이 있음.

3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83조는 법 개정(안 제4장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3조제3항 신설),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안 제83조제4항제3호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장의2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u>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보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³⁷⁾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안 제83조제3항은 안 제4장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83조제2항과 같이 해당 조문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현행법 제83조제3항제2호를 감안하여, 안 제62조의1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

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한국생산성본부 기관 현황

☐ (설립근거) 산업발전법 제32조*

*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주요연혁) 재단법인 설립('57), 특수법인 전환('86, 산업발전법)

☐ (조직 및 예산) 13본부·31센터·4지역본부·1연수원, 1,610억원('24)

☐ 국가보조사업 현황

○ (통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발표 및 국제비교, 그 외 상장기업 부가가치 등 발표

○ (포상) 생산성 향상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

* ('24.11.7) 제48회 국가생산성 대회 개최, 총 44점 포상

○ (인증) 기업의 경영수준을 평가하여 생산성 향상 체계를 구축 기업을 “생산성경영체제(PMS) 기업”으로 인증('04~)

* (인증실적, 개사) ('20) 145 → ('21) 161 → ('22) 155 → ('23) 190

○ (해외교류) 아시아생산성기구(21개국)에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 참가

☐ 수익사업 현황

○ (컨설팅) 기업 대상 경영혁신, 제조혁신, ICT융복합 등 분야의 컨설팅 실시

○ (교육) 공개모집교육, 기업맞춤형교육, 원격교육 등 연간 10만여명 교육

○ (지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등 발표

○ (자격인증) 국가공인 자격증(9개), 민간 자격증(50개) 평가·발급

* 국가공인(9) : ITQ, GTQ(GTQi), ERP(4종), IEQ, SMAT

** 민간(50) : ICT역량지수평가, SW코딩자격, CAD실무능력평가 등

【참고자료 2】 개정안 관련 기 시행 중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조·항	내용	세부사업 (사업코드)	지원 형태	내역 사업	주요내용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안 제62조의 14제1항 (생산성향상 기반 조성)	컨설팅 지원 (제2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4835-301)	보 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들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55,805	55,805	61,386
		채도약 촉진 (5161-302)	직 접	사업전환 촉진	사업전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 계획수립 등을 지원	6,454	7,342	37,24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제4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R&D) (4231-301)	보 조	동반성장 문화조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운영, 민간·공공분야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원	4,993	5,573	8,847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출연하거나 지원 (제2항)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1-303)	출 연/ 보 조	제조혁신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로봇·자동화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	143,086	205,651	221,166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공급기업 역량진단,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AS 지원 등	15,210	11,910	11,910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스마트제조 표준개발 현장설비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8,785	1,493	3,00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R&D) (2134-377)	출 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제조 3대 분야 (1.첨단제조, 2.유연생산, 3.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	32,176	43,665	51,690

조·항	내용	세부사업 (사업코드)	지원 형태	내역 사업	주요내용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안 제62조의 20 제1항 (승인기업 지원 및 사업 특례등)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제1호)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5152-301)	융 자	창업기반 지원자금	기술력·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	2000,000	1,835,800	1,335,800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300,000	212,000	300,000
		신성장 기반자금 (1261-301)	융 자	혁신성장 지원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748,717	836,050	600,750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437,294	476,220	466,610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중소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및 친환경 제조 전환을 촉진하여 그린경제 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46,018	96,674	93,750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261-303)	융 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대상 자금 지원	100,000	100,000	20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을 대상으로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지원	153,574	145,500	182,450

조·항	내용	세부사업 (사업코드)	지원 형태	내역 사업	주요내용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안 제62조의 20 제1항 (승인기업 지원 및 사업특례등)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 지원 (제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R&D) (2134-302)	출 연	수출 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90,601	128,364	186,404
				시장 확대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172,774	207,415	280,611
				시장대응 형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100,738	87,426	100,968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제3호)	기술혁신 기반조성(21 31-302)	보 조	혁신형기 업경쟁력 강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혁신 성과확산, 인증 희망기업 교육 등 혁신형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1,707	1,407	1,407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 업 (R&D) (2134-377)	출 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 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	32,176	43,665	51,690

조·항	내용	세부사업 (사업코드)	지원 형태	내역 사업	주요내용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인력의 양성·공급 에 관한 지원 (제4호)	산학협력인 력양성 (5431-301)	보 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등 우수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30,705	27,675	27,675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직업계고-전문대 학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20,465	20,510	24,672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 (제5호)	마케팅 지원 사업 (4835-305)	보 조	판로지출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민간 유통채널, 중기전용 판매장 입점 등 판로개척을 지원	12,561	16,570	12,561
				공동A/S 지원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제품 A/S 수리·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	6,230	5,607	4,766
		공공 구매제도 운영 (4835-307)	보 조	공공구매 제도이행 력제고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공공구매 모니터링, 실태조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직접생산확인지원	2,806	2,897	2,978
				기술개발 제품우선 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우선구매·시험구 매제도 운영	1,725	1,825	1,825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공공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현장설치 및 시험 검증 비용을 지원	1,000	1,000	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